

#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1-140
----------	-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## 1. 제안 이유

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거창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(안 제1조)

나. 서북부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근거를 둠(안 제3조제1항)

다. 법령 등 중복·재기재 및 위배 사항 삭제(안 제5조·제6조, 제19조~제21조, 제25조~제33조)

1) 조례 재기재: 수당, 위탁 시 의회 동의

2) 법령 재기재: 위탁자에 대한 경비지원, 시설 설치 및 변경, 사업 연도,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, 권리양도의 제한, 시설변경 금지, 시설반환, 보고 및 검사, 지도·감독 등, 준용, 시행규칙

3) 법령위배: 위탁의 취소, 휴·폐업의 허가, 운영주체에게 모든 책임 전가, 업무 대행

라. 법령 근거 인용법령 명시(안 제15조)

1) 내용: 운영의 위탁, 이용료

2) 근거: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51조

마.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의 기준충족을 위해 위탁계약서에 포함될 사항 명시(안 제18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51조,  
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

라. 기타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2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 2021. 10. 18.~11. 7.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: 반영함(안 제8조)

거창군 조례 제 호

##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명 “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”를 “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”로 한다.

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앞의 “제1장 총칙”을 삭제한다.

제1조 중 “이 조례는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44조 및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에 따라”를 “이 조례는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·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(중전 제4호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생산자단체”란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서북부거점산지유통센터의 설치 등) ①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1조제1항에 따라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(이하 “유통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② 유통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 일원에 둔다.

제5조·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7조 앞의 “제2장 유통센터운영위원회”를 삭제한다.

제7조 조 제목 “(설치 및 기능)”을 “(유통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)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“운영주체”를 “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할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“자로 한다.”를 “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,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.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거창군의회 의장이”를 “거창군의회에서”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“한한다”를 “한정한다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”를 “2년으로 한다.”로 한다.

제13조를 삭제한다.

제15조 앞의 “제3장 유통센터 위탁”을 삭제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15조(유통센터 운영의 위탁 및 이용료)** ①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군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실적에 따라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운영주체”를 “수탁자”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“별지 제1호서식”을 “별지 서식”으로 한다.

제17조 조 제목 “(운영주체 선정)”을 “(수탁자 선정)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본문(종전 제1항) 중 “때”를 “경우”로 “운영주체”를 “수탁자”로 한다.

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다.

1. 위탁내용
2. 위탁기간
3. 위탁료
4. 수탁자의 의무 및 보고
5. 군수의 관리·감독
6. 계약해지 사유
7.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
8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9조·제20조·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1조 앞의 “제4장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”을 삭제한다.

제22조제1항,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, 제24조 중 “운영주체”를 “수탁자”로 한다.

제25조부터 제32조까지, 제5장(제33조 및 제34조)을 각각 삭제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,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수탁자의 의무 등에 대한 적용례)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, 제31조·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위탁협약 시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<u>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</u></p> <p><b>제1장 총칙</b></p> 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44조 및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에 따라 거창군·함양군·합천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거점산지유통센터”란 농산물의 수집·선별·포장·가공·보관·수송·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.</li> <li>2. “농산물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.</li> <li>3. “운영주체”란 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15조에 따라 유통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.</li> <li>4. “생산자단체”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</li> </ol>	<p><u>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</u></p> <p><b>&lt;삭 제&gt;</b></p> 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거창군·함양군·합천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b>제2조(정의)</b>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<b>&lt;삭 제&gt;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농산물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.</li> </ol> <p><b>&lt;삭 제&gt;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. “생산자단체”란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</li> </ol>

현 행	개정안
<p><u>제3조(명칭 및 위치) 이 시설의 명칭은 “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”(이하 “유통센터”라 한다)로 하고, 그 소재지는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번지 일원에 둔다.</u></p>	<p><u>제3조(서북부거점산지유통센터의 설치 등)</u>  <u>①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1조 제1항에 따라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(이하 “유통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</u>  <u>② 유통센터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 일원에 둔다.</u></p>
<p><u>제5조(설치운영) ① 거창군수(이하 ‘군수’라 한다)는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</u>  <u>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·감독을 받는다.</u>  <u>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u>  <u>1. 유통센터 시설보완 및 현대화 사업</u>  <u>2.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지원사업</u>  <u>3. 그 밖에 군수가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</p>	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<p><u>제6조(시설 설치 및 변경) 군수는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<p><u>제2장 유통센터운영위원회</u></p>	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현 행	개정안
<p><b>제7조(설치 및 기능)</b>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통센터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<u>운영주체의 선정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~4. (생략)</p> <p><b>제8조(구성) ①·②</b> (생략)</p> <p>③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, 재무과장, 농업기술센터소장, 거창군·함양군·합천군의 각 유통센터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자</u>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<u>자로</u> 한다.</p> <p>1. <u>거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함양·합천군수가 추천하는 <u>자</u>(3명 이내에 <u>한한다</u>)</p> <p>4. (생략)</p> <p><b>제9조(위원의 임기)</b> 위촉위원의 임기는 <u>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</u>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><b>제13조(수당 등)</b> 위원회에 참석한 <u>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	<p><b>제7조(유통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)</b>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통센터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<u>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할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의 선정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8조(구성) ①·②</b>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, 재무과장, 농업기술센터소장, 거창군·함양군·합천군의 각 유통센터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사람</u>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<u>사람으로</u> 한다. 이 경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.</p> <p>1. <u>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함양·합천군수가 추천하는 <u>사람</u> (3명 이내에 <u>한정한다</u>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9조(위원의 임기)</b> 위촉위원의 임기는 <u>2년으로 한다.</u>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><b>&lt;삭 제&gt;</b></p>



현 행	개정안
<p><b>제3장 유통센터 위탁</b></p> <p><b>제15조(운영위탁)</b> ①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</li> <li>2. 제1호의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</li> <li>3.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유통업체</li> <li>4. 제1호의 생산자단체, 제2호의 법인 및 전문유통업체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</li> <li>5.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3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</li> </ol> <p>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주체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.</p> <p>③ 유통센터의 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.</p> <p><b>제16조(위탁신청)</b> ① 군수가 유통센터의 운영주체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공개적인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② 유통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~6. (생략)</p>	<p><b>&lt;삭 제&gt;</b></p> <p><b>제15조(유통센터 운영의 위탁 및 이용료)</b> ①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법 제5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군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실적에 따라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<b>제16조(위탁신청)</b> ① 군수가 유통센터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공개적인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</p> <p>② 유통센터의 관리·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~6.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정안
<p><u>제17조(운영주체 선정) ①</u> 군수는 제16조 제2항에 따른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산물의 수집·판매능력, 투자계획, 자금조달계획, 경영계획, 인력 확보 및 농산물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<u>운영주체</u>를 선정하여야 한다.</p> <p><u>②</u> 군수는 제1항에 따라 <u>운영주체</u>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의회 <u>의 동의</u>를 받아야 한다.</p>	<p><u>제17조(수탁자 선정)</u> 군수는 제16조 제2항에 따른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농산물의 수집·판매능력, 투자계획, 자금조달계획, 경영계획, 인력 확보 및 농산물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<u>수탁자</u>를 선정하여야 한다.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<p><u>제18조(위탁협약 및 지정) ①</u> 군수는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운영주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,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<u>제18조(위탁협약 및 지정) ①</u>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위탁내용</u></li> <li>2. <u>위탁기간</u></li> <li>3. <u>위탁료</u></li> <li>4. <u>수탁자의 의무 및 보고</u></li> <li>5. <u>군수의 관리·감독</u></li> <li>6. <u>계약해지 사유</u></li> <li>7. <u>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</u></li> <li>8. <u>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li> </ol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제19조(위탁의 취소 등) ①</u>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제15조제3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</u></li> <li>2. <u>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</u></li> <li>3. <u>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</u></li> </ol>	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4.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곤란한 경우</p> <p>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한 경우 운영주체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</p> <p><b>제20조(이용료)</b> ① 군수는 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·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로부터 해당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 범위 안에서 이용료를 징수하되, 매년 유통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운영주체는 매년 12월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 내에 이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4장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</b></p> <p><b>제21조(사업연도)</b> 유통센터의 사업연도는 거창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</p> <p><b>제22조(장부비치)</b>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. 1.~4. (생략) ② (생략)</p> <p><b>제23조(운영방법)</b>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 관리, 농산물 수집·출하·판매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② 운영주체는 거창군·함양군·합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. ③ 운영주체는 농산물의 표준화·기계</p>	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<b>제22조(장부비치)</b>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. 1.~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23조(운영방법)</b> ①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, 농산물 수집·출하·판매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② 수탁자는 거창군·함양군·합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. ③ 수탁자는 농산물의 표준화·기계</p>

현 행	개정안
<p>화·규격화·공동출하 등을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,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 <p>④ <u>운영주체</u>는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, 우수농산물품질인증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, 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원물의 고급화에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24조(취급물품의 제한)</b> <u>운영주체</u>는 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을 유통센터에서 취급하지 못한다.</p> <p><b>제25조(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)</b> ① <u>운영주체</u>는 유통센터의 토지, 건물, 기계, 물류기기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·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,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.</p> <p>② <u>운영주체</u>는 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통상적 시설·설비의 설치, 보수장비의 유지, 개·보수,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 다만, <u>운영주체</u>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, 시설물 및 장비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한 교체, 대수선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 <p>③ <u>운영주체</u>는 유통센터의 안전사고</p>	<p>화·규격화·공동출하 등을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,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 <p>④ <u>수탁자</u>는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, 우수농산물품질인증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, 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원물의 고급화에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24조(취급물품의 제한)</b> <u>수탁자</u>는 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을 유통센터에서 취급하지 못한다.</p> <p><b>&lt;삭 제&gt;</b></p>

현 행	개정안
<p>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,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.</p> <p>④ 운영주체는 유통센터를 관리·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.</p>	
<p><u>제26조(권리양도의 제한)</u>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재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
<p><u>제27조(시설변경 금지)</u> 운영주체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의 건축·증축·개보수·철거·훼손·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, 군수는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
<p><u>제28조(시설반환)</u> 운영주체는 위탁기간의 만료, 위탁의 취소, 해산,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
<p><u>제29조(휴·폐업 허가)</u> ① 운영주체가 휴업을 하려는 때에는 그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·유통인·소비자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</p>	<p>&lt;삭 제&gt;</p>

현 행	개정안
<p>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려는 때에는 그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군수가 폐업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30조(업무대행)</b> 군수는 운영주체가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휴·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그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<b>제31조(보고 및 검사 등)</b> ①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원물 확보, 마케팅계획 등이 포함된 연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운영주체는 월별 또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하고, 매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군수는 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·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32조(지도·감독 등)</b> ① 군수는 유통센터가 효율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주체에 그 운영방법 및 출하농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.</p>	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

현 행	개정안
<p>② <u>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1.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</u></p> <p><u>2. 구매·판매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</u></p> <p><u>3.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</u></p> <p><b>제5장 보칙</b></p> <p><b>제33조(준용)</b> <u>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유통센터의 위탁 및 관리·운영에 관하여는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,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 등을 준용한다.</u></p> <p><b>제34조(시행규칙)</b> <u>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